



뉴욕한인노인상조회 **상조회 가입서** (Application for KASMA Member) *복수가입자용*

| | |
|--------------------------------|---|
| 가입자번호 Membership NO. | 번 |
|--------------------------------|---|

| | | |
|------------|-------------|------------|
| 취급자 | 사무총장 | 회 장 |
| | | |

본인은 뉴욕한인노인상조회의 사업취지에 동의하고 정관 규약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하면서 가입을 신청 합니다.
 I acknowledge the bylaws of KASMA and agree to the regulation of it.
 I hereby apply for membership in the KASMA

가입비(Registration fee) **\$150-** **년회비**(Annual fee) **\$40-** *복수가입

| | | | | |
|---------------------------|--------------------|--------------------------------------------------|------------------|-----------------------------|
| 가 입 자 Mem ber | 성 Name | 한 글 Korean: | 성 별 Gender | 남M () 여F () |
| | 명 | 영 문 English: | 생년월일 D.O.B | 년 월 일 Y M D |
| | 주 소 Addr ess | | | 전화번호 Phone |
| | | ID # () | | |
| | | Citizenship(), Green Card() Others() | | |
| 제 일 수 권 자 | 성 | 한 글 : | 전화번호 | () |
| | 명 | First Beneficiary: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 주 소 | | | 가입자와 Relationship 관 계 |
| 제 이 수 권 자 | 성 | 한 글 : | 전화번호 | () |
| | 명 | Second Beneficiary: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 주 소 | | | 가입자와 관 계 |

202 년 월 일 가입자 서명(Member Signature) : _____

추천인(Introducer) : _____ (Tel): _____

뉴욕한인노인상조회 귀중 To Kor-Ame Senior Mutual Assn.

상조회 가입약관 동의서

Written Consent of Regulation

*복수가입자용

Member's No. :

번

Name :

본인은 뉴욕한인노인상조회(이하 상조회)의 아래 상조회 가입약관을 인지하고 가입 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이에 확인 서명합니다. (I acknowledge the bylaws of KASMA and I swear that I will not raise any objection on this contract.)

1. 가입시 가입금 \$150과 년회비 \$40을 납부하고 년회비는 매년 납부한다. (정관 제 37조) 단, 납부한 가입금, 년회비, 상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No refund registration fee, annual fee and all paid money when contract cancellation)(정관 제 9조)
2. a. 상조금(장례비)계약금액은 (Contracted condolence money)\$15,000-이며 가입자 사망시(Paying when member deceased) 통신행정수수료, 미납금등 의무납부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b. 상조금(조의금)수납은 상조금 지불총액을 전월 총가입자 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모든 가입자가 균등하게 납부한다.
3. 상조금(조의금)은 납부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3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정관 제10조)
4. 가입자 사망시 제일수권자(Beneficiary)는 사망증명서 원본, 장례비 청구서 혹은 영수증과 본인 ID를 지참하고 본회에 내방하여 상조금을 청구하여야 한다.(정관 제 43조)
5. 수권자는 통지서 발송비용(행정비, 우송료, 인쇄물등) 상조금 수령에 소요되는 통신 행정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수령 상조금의 5%로 정한다. (정관 제 45조) (Deduct 5 percent from condolence money as a correspondence & communication expenses.)
실수령액: 가입 10년후 사망시 통신비 공제후 실수령액은 \$14,250-(Actual receivable money)
6. 가입자 사망시 수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장의사로 장례비를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정관 제 43조)
7. 가입자 사망시 다음 기준에 의하여 상조회 기금중에서 우선 상조금을 지급한다.(정관 제44조)
a. 가입일로부터 2년 미만에서 사망시는 상조금을 지불치 않는다.(No payment under 2year death)
b. 가입일로부터 2-3년은 20%, 3-4년은 30%, 4-5년은 40%, 5-6년은 50%, 6-7년은 60%, 7-8년은 70%, 8-9년은 80%, 9-10년은 90%.(After 2 years 10% increase until 10 years)
c. 가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사망시는 해당 금액의 100%를 지급한다.(Over 10year: \$15,000-)
*미만이라 함의 예: 1월 15일 가입자가 다음해 1월 14일 사망하면 1년 미만 사망자임.
8. 가입자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시는 즉시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관 제 9조)
9. 가입자로서 정관을 위반하거나 납부의무가 있는 상조금과 년회비를 3개월 이상 체납시 자진 탈퇴한것으로 간주하고 제명시킬 수 있다. (When fail to pay over 3 month, the contract cancelled automatically) (정관 제 12조)
10.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인정되는자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자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으며 (정관 제11조) 직,간접적으로 본회의 조직을 혼탁하게 하고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운영상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를 한 자는 제명시킬 수 있다. (정관 12조)
11. 위의 8, 9, 10항에 해당되는 가입자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민사, 형사상의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2. 제명 혹은 해약된자가 해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복원을 원할시 미납금을 완납하고 복원할 수 있으나 3개월부터 6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금을 완납하고 주치의의 건강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정관 제10조)
13.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정관 제 52조)
1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다수의 사망자 발생시는 이사회 결의로서 상조금을 조정 지급할 수 있다. (정관 제 53조)
15. 정관이 개정되었을시 특별히 명시된 단서가 없는한 개정 이전가입자도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정관제54조)
16. 가입자는 수권자 변경신청서에 서명하므로써 수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17. 복수 가입자가 1개, 혹은 2개조 해약을 원할시는 미납금을 완납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완납 의사가 없을 시는 나머지 1개 구좌도 동반 탈퇴하여야 한다.
18. 기존 가입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있음을 알리지 않고 추가로 가입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본회 직권으로 회원의 모든 가입계약을 즉시 파기할 수 있다.
19. 1개 가입자가 추후 복수가입을 원할시 최초 가입후 1년이내 가입할 수 있다.

****위의 규약을 분명히 인지하고 서명합니다****

202 년 월 일

**** I acknowledge the above regulation and sign here.****

To kor-Ame Senior Mutual Assn. 가입자 서명(Signature):